법원 및 지구, 지원 또는 부서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법원용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캘리포니아 주민 대 피고: **참고용**	
형사 절차 보호 명령(CLETS) (형법 §§136.2 및 1203.097(a)(2)) ☐ 재판 계류 중 명령 ☐ 변경 ☐ 재판 후 보호 관찰 상태 명령 ☐ 가정 폭력 사건 (형법 § 13700)	사건 번호:

이 명령은 이와 상충되는 다른 법원 명령에 우선합니다.

금지 대상자(완전한 이름):_____

성별: ☐남 ☐여 신장:_____ 체중:_____ 머리 색깔:_____ 눈 색깔:_____ 인종:_____ 연령:_____ 생년월일:_____

☐ 피고는 _____ 부서의 치안관입니다.

1. 이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부서: 호실:
   담당 사법 공무원(이름):
2. ☐ 피고는 법원 청문에 직접 출석했으므로 금지 명령 송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3. 위에 기명된 피고는:
   a.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희롱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학대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그의 개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b.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총기를 다음 시간 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하거나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해야 합니다:**
      (1) ☐ 이 명령을 발부한 후 24시간 이내(금지 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한 경우)
      (2) ☐ 이 명령을 송달한 후 48시간 이내(금지 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 기타(자세히 기재):

      금지 대상자는 이 명령을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이 명령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피해자나 증인이 청문에 출석하거나, 증언하거나, 법 집행 기관이나 법 집행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방해 또는 만류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d. ☐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e. ☐ 법원에 기록된 변호사를 제외한 제삼자를 통해서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에게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f. ☐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에게 _____ 야드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g. ☐ 이 명령의 (d), (e) 또는 (f) 절의 "연락 금지" 또는 "접근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로서, 사건 번호 _____에 대해 (날짜):_____에 첨부된 것과 같이 발부된 가정 법원, 소년 법원 또는 검인 법원의 명령에 기술된 법원 명령 방문과 관련된 자녀의 안전한 교환을 위해서만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와 평화적인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h. ☐ 이 명령의 (d), (e) 또는 (f) 절의 "연락 금지" 또는 "접근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로서, 이 명령에 서명한 날짜 이후에 발부된 가정 법원, 소년 법원 또는 검인 법원 명령에 기술된 방문과 관련된 자녀의 안전한 교환을 위해서만 아래에 기명된 보호 대상자와 평화적인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4. ☐ 보호 대상자는 금지 대상자가 금지된 연락을 하는 경우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5. 보호 대상자의 완전한 이름:

6.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하는 기타 명령:

7. 이 명령은 다음 날짜에 종료됩니다(날짜를 기재):
   명령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부한 날짜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날짜:

참고용

사법 공무원 부서/과: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R-160 K [Rev. January 1, 2003]

Penal Code, §§ 136.2, 166, 1203.097(a)(2)
Form Approved by
Department of Justice

경고 및 통지문

1. 이 명령은 이와 상충되는 이전 또는 이후의 다른 모든 보호 명령, 방문 명령 또는 다른 법원 명령에 우선합니다.

2.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범으로 기소됩니다.** 이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법정 모독죄, 경범죄 또는 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여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숨기는 것은 중죄에 해당될 수 있고, 주 교도소 수감,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의도로 주 또는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여성 폭력 방지법, 18 U.S.C. §2261(a)(1)(1994)에 의해 연방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기에 관한 통지문.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000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건에 대한 청문에서 이 명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모든 총기를 양도하고 이 금지 명령의 유효 기간 동안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연방법은 청문 후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보통 금지 대상자가 총기나 탄약을 소유, 수령, 운반 또는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별도의 연방 범죄가 됩니다.**

4.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금지 명령 집행**
   - 캘리포니아 주의 법 집행 기관이 이 명령을 접수하거나, 이 명령의 사본을 제시 받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을 통해서 명령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금지 대상자가 명령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자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이 명령의 조항을 알려주고, 그 후에도 금지 대상자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가족법 §6383.)

5. **주 경계 밖에서 발부된 금지 명령 집행.** 타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부족 토지 및 미국 영토에서 발부된 금지 명령은 발부 법원이 그 지역이나 법정의 법에 따라 당사자들과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부된 명령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문면상으로 정본인 것처럼 보이면 유효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가족법 §6380.5(a).)

6. **여성 폭력 방지법(VAWA) 준수 증명서.** 이 양식에 기재된 금지 명령은 여성 폭력 방지법, 18 U.S.C. §2265(1994)의 완전한 신뢰 및 신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법원은 당사자들과 주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금지 대상자는 이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 통지 및 적시에 청문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모든 부족 토지, 그리고 모든 미국 영토 내의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관할 구역에서 발부한 명령인 것처럼 집행됩니다.

7. **명령의 유효일 및 종료일**
   - 이 명령들은 사법 공무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이 명령들은 앞면의 항목 7에서 설명한 대로 종료됩니다.
   - 금지 명령에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부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자녀 양육권, 방문, 부양비 명령과 재산 및 기타 명령은 종료일이 각각 다르며 보통 다른 법원 명령이 발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8. **자녀 양육권 및 방문**
   -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은 가정 법원, 소년 법원 또는 검인 법원에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이나 방문에 대한 가정 법원, 소년 법원 또는 검인 법원의 명령에 의해 허가된 금지 대상자와 보호 대상자 사이의 연락은 이 명령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스 3(h)에 표시한 경우, 금지 대상자와 보호 대상자는 가정 법원, 소년 법원 또는 검인 법원이 최근에 발부한 자녀 양육권이나 방문 명령의 인증 사본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